

일부 日本学者들의 독도 사료조작으로 인한 영유권 본질의 훼손

최 장 근*

目 次

1. 들어가면서
 2. 독도의 지리에 대한 사료조작
 3. 독도의 전근대사의 사료조작
 4. 독도의 근대사의 사료조작
 5. 독도의 현대사적 사료조작
 6. 나오면서
-
-

1. 들어가면서

일본외무성은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문헌이나 지도에는 과거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 일본외무성이 무엇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설치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재확인하였을 시점에 일본정부가 표면적으로 영유권주장을 하게 되었을 시점에서는 내셔널리즘에 의한 것이었다. 그 이후 일본외무성은 학자를 고용하여 독도영유권 주장의 논리를 개발하도록 했고, 또한 학자들 중에서도 내셔널리즘의 입장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의 논리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연구의 목적은 일본외무성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어떠한 학자들이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역사적 문헌 및 지도를 어떻게 해석하여 일본외무성에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일본외무성에 논리를 제공한 학자들은 시기별로 사안별 제각기 다르게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기존의 문헌과 사료를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국영토로서의 근거를 부정하고 일본영토로서 근거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논리를 조작¹⁾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평화선선언, 한일협정체결, 어업협정체결, 島根縣의 ‘竹島의 날’ 제정, 등, 그때그때마다 어용적인 학자가 등장하여 외무성의 영유권주장을 지원하는 논리를 조작해왔다. 일본의 어용적인 학자들은 사료를 조작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의 영토를 부정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독도는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17C 안용복이 영유권을 주장한 우산도(일본의 松島, 즉 독도)는 독도가 아니다. 17C 『隱州視聽合紀』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中久保赤水의 「日本輿地路程圖」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로 표기했다. 林子平의 「三國接壤地圖」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되었다. 17C 막부의 울릉도 도항면허는 일본영토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1696년 막부의 울릉도도항 금지는 독도와 무관하지 않다. 1696년 막부의 울릉도도항금지이후 일본은 松島(독도)를 경영했다. 태정관문서의 ‘竹島 외 1島’에서 1島는 독도가 아니다. 1900년 칙령41호의 ‘石島’는 독도가 아니다. 독도 편입조치는 무주지 선점조치로서 합당하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처리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 어용학자들의 영유권주장의 논리의 조작여부를 논증한다. 그 방법으로는 고대, 전근대, 근대, 현대, 즉 시대별로 문헌과 지도로 보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인식과 한국의 영유권 인식을 먼저 고찰하고, 이를 기준으로 어용학자들의 사료조작을 지적하려고 한다.

연구의 독창성에 관해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발굴된 부분 부분적인 문헌과 지도를 분석하여 일본의 영유권주장을 비판해왔는데, 본 연구는 ‘사료 조작’에 초점을 맞추어 어용적인 학자들이 사료를 본질대로 해석하지 않고 일본영토라는 전제를 깔고 사료를 조작했음을 논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게다가 부분적인 논증이 아니라, 총체적인 논증을 통하여 독도영유권의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1) 여기서 ‘조작’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용어로 (1)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드는 것, (2)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드는 것, (3)없는 것을 지어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사료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것은 (1)의 ‘사실인 듯이 꾸며내는 것’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상 영토취득 요건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누가 먼저 발견하여 실효적 지배를 오랫동안 해왔으며, 현재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독도의 경우는 두개의 작은 암초로 되어 있어서 섬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근대에 들어와서 인정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독도에 대한 전근대와 근대의 영토인식에서 한국과 일본 어느 쪽에 권원이 더 많이 있는 가를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2. 독도의 지리에 대한 사료조작

(1)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독도와 울릉도는 가시거리에 있다. 실제로 독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 날씨가 청명한 날 해질녘 태양이 울릉도를 넘어갈 때면 특히 독도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근세시대 일본어부들이 울릉도에 도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이들은 먼저 독도에 이르러 울릉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도행했을 것이다. 울릉도에서도 독도가 보인다.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곳은 성인봉으로 986미터인데, 해발 약 200미터지점의 높이에서부터 독도가 보인다. 또한 독도방향으로 해상으로 약 17킬로 지점부터 독도가 보인다. 울릉도는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릉도사람들은 해발 200미터정도는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었고, 또한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고 있었기에 자유롭게 바다를 왕래했다. 그리고 증언에 의하면 기후의 변화에 따라 해안가에서도 독도 방향을 자세히 보면 독도가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²⁾ 이러한 울릉도와 독도간의 지리적 인식은 조선시대의 몇 안 되는 왕조실록 지리지에도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동해에 2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울릉도와 우산도로서 날씨가 청명한 날 잘 보인다”라는 것이다. 당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리적 거리를 표현했다. 오늘날 울릉도와 독도간의 지리적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川上健三은 가시거리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우산국에 속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잡한 공식을 동원하여 울릉도에서는 해발

2)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 회장 이예균씨의 증언.

200미터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독도가 보이지 않는데, 당시는 밀림 때문에 200미터지점에 올라갈 수 없었다는 논리이다.³⁾

川上健三가 이러한 설득력 없는 논증을 조작하는 이유는 조선왕조의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등의 고문헌 기록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울릉도는 512경에 신라의 영토가 되어 우산국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울릉도사람들은 가시거리에 있는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생활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인식은 문헌적 고증보다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더 분명한 증거력을 갖는다. 그런데 최근 下条正男는 川上健三의 주장을 답습하여 가시적인 것보다 문헌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下条正男는 문헌적 기록에 대해서 모든 고문헌의 거리표시는 육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선실록에 등장하는 ‘相距不遠’, ‘則可望見’, ‘歷歷可見’ 등은 육지와 울릉도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사료를 조작하여 독도와 울릉도간의 지리적인 증거를 부정하고 있다.⁴⁾

따라서 고대나 지금이나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대부터 근세까지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독도는 자연스럽게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영역으로 타국의 영역이라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다.⁵⁾

3. 독도의 전근대사의 사료조작

(1) “우산국’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동해에 호족국가 우산국이 있었는데, 512년 신라에 편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 편입된 우산국은 울릉도가 본거지였고, 우산국 거주민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우산도사람들은 날씨가 청명하며 바다로 나갔고, 가시거리에 있는 동남쪽 바다의 독도를 의식하면서 살아왔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독도는

3) 川上健三, 『竹嶋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pp. 281-282.

4) 김병렬,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다다미어, 2001. p. 83.

5) 영역과 영토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영토라는 개념은 근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개념이고, 영역의 개념은 국가가 탄생하는 고대시대부터 존재했고, 국경은 주로 지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 소유권이 존재하기도 했다.

울릉도만큼 매력적인 큰 섬은 아니었다. 그래서 근대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은 단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섬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러나 신라는 우산국을 영지로 하고 있었기에 동해상에 울릉도(群)와 독도(群)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했음은 물론이고 영지로서 다스리고 있었다. 그 증거로서 조선시대 초기부터 후기에 걸쳐 동해에 「우산, 울릉」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문헌상의 기록 및 지도상의 표시가 많이 등장한다. 다만 조선초기부터 공도정책으로 사람의 거주를 금하여 50년, 100년, 200년 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울릉도에서 연중 50일 정도 밖에 보이지 않는 독도의 존재가 문헌상 기록에만 남아있을 뿐, 서서히 그 존재여부가 애매해졌던 시기도 있었다.

한편 일본측의 일본열도는 물론이고 隱岐 섬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보이지 않아서 17세기(1618년 울릉도도항면허) 이전의 독도는 일본과 무관한 섬이었다.

川上健三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우산국」의 영역으로서 독도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우산국과 무관하다고 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⁶⁾ 역사를 기록할 때 반드시 문헌적 기록만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독도와 울릉도가 문헌상으로 잘 보이는 거리에 있다는 기록이 없더라도 현재 두 섬이 잘 보이면 고대시대에도 두 섬은 서로 보였다고 기술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독도를 언급한 기록은 없지만, 중세 이후 문헌에 울릉도와 독도가 항상 한 쌍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본다면, 울릉도가 조선영토이므로 가시거리에 있는 독도에 대해서 강력한 영유의식은 없었을지는 몰라도 독도를 우산국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당연하다. 과거는 지금보다 공기가 훨씬 더 맑아서 두 섬을 서로 더 잘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한다.⁷⁾ 이처럼 실제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에 고대 울릉도사람들이 독도를 우산국의 영역으로 생각했다는 해석조차도 일본은 부정하고 한다.

(2) “역사적으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조선조정의 고문헌에 「于山武陵二島，在隕正東海中，二島相去不遠，風

6)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pp. 98-99.

7) 울릉도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40년 전만 하더라도 울릉도에서 강원도를 자주 바라볼 수 있었을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하늘이 청명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1천500년 전의 고대시대는 훨씬 쉽게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日清明, 則可望見」⁸⁾이라고 하여 동해에는 날씨가 청명한 날 우산도와 무릉도 2섬이 서로 잘 보이는 거리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들 3문헌을 비교해보면, 『고려사지리지』 (1452년)에는 ‘1도2도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에는 2도설, 『증보동국여지승람』 (1531년)에는 ‘2도1설’이 존재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는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섬이 존재하는데, 울릉도라는 섬은 실제로 확인된 섬이고, 우산도라는 섬은 그 정보가 명확하지 않았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1692년 이후 조선조정에서는 안용복이 독도(일본호칭의 松島)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부터는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라는 인식이 고정되어갔다. 안용복이 「竹島一件」의 외교분쟁 때에 松島와 竹島가 조선영토임을 주장하여 막부가 인정했다는 기록이 일본의 『村川家文書』, 한국의 『숙종실록』에 남아 있다. 이 사실은 『동국문헌비고』 (1770), 『만기요람』 (1809), 한진선의 『해동략사』 (1823)에도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 즉 왜가 말하는 소위 松島”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川上健三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조선 문헌에 나와 있는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칭이고, 또 이미 삼봉도는 그 소재가 金自周라는 사람이 적은 글 이외에는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오늘날 독도에 해당하는 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울만한 증거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⁹⁾ 또한 『고려사지리지』의 “울릉도, 在 隄 正 東 海 中 일설에 의하면 우산 울릉 원래 2섬”,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 무릉 2도 在 隄 正 東 海 中 2 두 섬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風月清明 하면 잘 보인다. 신라시대 우산국 즉 울릉도”, 『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 울릉도 2도 在 隄 正 東 海 中에 있고, 風月清明 하면 서로 歷歷可見, 일설에 의하면 우산 울릉 원래 1 섬”을 비교하여 『고려사지리지』 이후에 2도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산도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므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기술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우산국은 울릉도를 말한다고 했다.¹⁰⁾

8) 『동국여지승람』에 본토와 울릉도 사이에 그려진 「우산도」는 「우산, 무릉 2도」에 입각한 지도이다. 당시는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서, 섬의 형상이나 거리, 명칭 등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

9) 川上健三, 『竹嶋の歴史地理学的研究』, pp. 113-117. 대한민국주일대표부, 「1953년 9월 9일자, 1954년 9월 25일자 의 구술서」, 堀和生는 조선정부가 15세기부터 竹島=독도를 우산도로서 자국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혼란이 있었던 시기도 있지만 19세기말에는 다시 한 번 영유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고 논박했다. 堀和生, 「1905年の竹嶋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No.24, 1986년12월, pp. 101.

특히 『동국여지승람』의 “풍월청명하면 서로 역력가견”에 대해 울릉도에서 조선 본토 간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나 「강원도부분도」에 대해서는 「2도설」은 관념적인 것으로서 실제의 식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잘 보이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¹¹⁾ 그리고 『태종실록』(17년2월 임술조)에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왔다’ ‘우산 무릉 等處’ ‘우산 무릉 居人’ ‘무릉 居人’ ‘우산인’, 태종12월4일의 ‘流山国島’, ‘무릉도’,¹²⁾ 『동국여지승람』의 ‘일설 우산 무릉 원래 1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강원도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등의 표기로 보아 「우산도=울릉도」로서 1개 섬이라고 하여 우산도가 독도인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문맥상의 2도설을 부정하고 1도설만 채택한 결과이다. 『숙종실록』의 안용복 기록에 대해서는 허위진술이고, 『동국문헌비고』(1770)등의 우산도=松島(독도)설은 편찬자가 무비판적으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한다.¹³⁾

太寿堂鼎도 “만약 우산도가 울릉도의 별칭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한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산국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형성되어졌다고 한다면 사람이 사는 울릉도로부터 100키로나 떨어진 물도 나오지 않고 사람이 살수 없는 바위산인 독도=우산도를 국명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¹⁴⁾ 이러한 지적은 독도를 우산국으로 호칭한 것이 아니라, 동해의 「우산, 무릉 2섬」 중에서 ‘울릉도(=무릉)’의 존재는 분명히 확인되었으나,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섬을 「우산도=독도」로 표기하게 된 경위에 대한 역사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비전문가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러한 해석은 이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한 학자들, 예를 들면, 中村榮孝¹⁵⁾, 田村清三郎¹⁶⁾、植田捷雄¹⁷⁾、太寿堂鼎¹⁸⁾등도 같은 주장이다.

10)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 pp. 102-103.

11)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 pp. 104

12)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 pp. 99-108.

13) 김병렬,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p. 33.

14) 太寿堂鼎 「竹島論争」, 『國際法外交雜誌』第64卷 第4·5号, 1966, pp. 114.

15) 中村榮孝, 『日鮮關係史研究』, 吉川弘文館, 昭和44, p. 450.

16)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 昭和40, p. 151.

17) 植田捷雄, 「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第54卷 第1号, 1965, p. 29.

최근에 독도연구를 시작한 下条正男는 한발 더 나아가서 과거의 문헌상 지리적 표기는 육지를 기점으로 했다고 하여 ‘두 섬이 서로 잘 보인다’고 하는 문헌상의 해석에 대해 두 섬을 관할하는 ‘울진현으로부터 두 섬이 멀지 않다’고 하는 식으로 전혀 다른 해석으로 사료를 조작했다. 또 1692년의 「竹島一件」 때, 조선조정이 육지에서 울릉도가 잘 보인다고 하여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역력가견’은 울릉도와 독도가 잘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¹⁹⁾ 또 『東国文献備考(輿地考)』에 대해서도 「1설에 의하면 울릉, 우산은 원래 1개 섬」이라는 부분만 발췌하여 ‘유성원은 동해에는 1개의 섬밖에 없다고 했는데, 신경준이 2개의 섬’이라고 사료를 개찬했다. 「1설에 의하면 1도」만 인용하여 동해에는 ‘1도’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서 동국문헌비고의 「우산도는 일본에서 말하는 松島」라는 기록은 「춘관지」의 ‘1도설’에다가 안용복의 증언을 삽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우산도는 松島가 아니라고 사료를 조작하고 있다.²⁰⁾

그런데, 사실은 『東国文献備考(輿地考)』에는 「여지지가 말하건대,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松島」라고 하고 있고, 疆界考에는 「생각건대, 여지지가 말하건대, 일설에 우산 울릉은 원래 1개의 섬이다. 그런데 여러 지도와 지지를 보면 2개의 섬으로 되어있다. 1개는 즉 말하자면 松島이고, 생각건대 2개 섬 모두 우산국이다」라고 되어 있다.²¹⁾

신경준이 인용한 유성원의 『輿地志』(1656년)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지지가 「동국여지승람」을 인용했다면, 「동해에는 2개의 섬이 있고, 일설에 의하면 원래 1개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경준은 원래 2개 섬이라는 사실을 채택함과 동시에 유성원의 ‘일설’을 설명하기 위해 안용복의 증언을 토대로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松島라는 것이다. ‘일설’이라는 말은 반드시 ‘본설’이 존재해야 문맥이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본설」이 주된 내용이고, 「일설」의 부분은 참고정도의 내용이다. 예를 들면, 『동국여지승람』(1481)에는 2설을 본설로 하여 부속지도에도 2개의 섬을 그리고 있다. 요컨대, 유성원은 ‘주설’의 2도설과 ‘부설’의 1도설에 대해

18) 太寿堂鼎, 「竹島論争」, 『國際法外交雜誌』, 第64卷 第4·5号, 1966, p. 114.

19) 下条正男, 『竹島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芸春秋, p. 61.

20) 下条正男, 「竹島問題、再反論する」, 『現代コリア』, 1999년 5월.

21) 下条正男, 『竹島日韓どちらのものか』,

신경준은 2도설이 명확하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할 수 있다.²²⁾

(3) “17C 안용복이 영유권을 주장한 우산도(일본의 松島, 즉 독도)는 독도가 아니다.”

한일 양국의 사료에 의하면, 일본 문헌에 안용복은 「竹島는 울릉도, 松島는 子山島로서 양섬 모두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섬」이라고 주장했고,²³⁾ 우산도가 松島라는 인식은 관찬사서인 『동국문헌비고』(1770)에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즉 왜인이 말하는 松島」의 기록, 그 이외에도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의 관찬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⁴⁾ 이를 보면, 17세기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일본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안용복은 1696년 승려 퇴헌, 유일부, 이인성 등 11명과 5월20일 배로 隱岐島에 도착하여 出雲藩 대관에게 자신들은 竹島(울릉도)에 도항한 조선배 32척 중 1척으로 「伯耆藩(鳥取藩)에 소송하기 위해 도항했다」고 했다.²⁵⁾ 이 때 「鬱朝兩島減稅將」라는 관리로서 왔다고 했다.²⁶⁾ 물론 안용복은 독도 및 울릉도를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직을 사칭하고 있었다. 이때 안용복은 자신들이 타고 온 11명은 伯耆에 와서 鳥取藩의 伯耆태수에게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했고, 順風滿帆으로 隱岐에 들렀다고 했다. 伯耆에 갈 예정이라고 했고, 5월15일 竹島(울릉도)를 출발해서 그날 松島에 도착했고, 16일 松島를 나와 18일 아침에 隱岐의 西村의 磯(바위)에 도착했다. 20일 大久村에 입항한다고 했다. 松島는 강원도의 자산도라는 섬인데, 일본은 이것을 松島라고 한다. 이것 또한 조선팔도의 지도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²⁷⁾

안용복은 元祿6년(1693년) 일본에 납치되어 갔을 때 그 배가 松島에 들

22) 반월성은 유성원이 2도설 주장으로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松島라는 설로 下条正男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23) 2005년5월에 「1695년 5월」자의 村川家(가문)문서인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가 발견되었다. 그 내용에 조선팔도 ‘강원도’에 “이 섬 중에 竹島와 松島가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4)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25)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26)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27) 村川家(가문)문서의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에 조선팔도 ‘강원도’에 “이 섬 중에 竹島와 松島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경상북도편, 『독도올바로알기』 경상북도, 2006, p. 25.

렸을 것이다. 안용복은 울릉도 이외에 동해에 일본인들이 부르는 松島라는 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전에 안용복은 한국에서 전승되어오던 동해의 2개 섬 울릉도 이외의 1섬이 우산도 즉 일본이 말하는 松島임을 알았던 것이다.²⁸⁾

조선조정은 「竹島1건」이 발생했을 때 장한상을 울릉도 조사단으로 파견했다. 장한상은 안용복의 진술을 토대로 울릉도의 中峰에 올라가서 독도를 관찰했는데 그 조사내용이 『鬱陵島事蹟』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울릉도 중봉에서 서쪽으로 멀리 보면 대관봉이 구불구불한 모습이 보이고, 동쪽을 보니까 海中에 1도가 보인다. 멀리 동남동 방향에 위치하여 그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미만으로 거리는 300여리(120키로)에 지나지 않는다.」

안용복이 일본이 말하는 松島가 우산도라고 주장하여 오늘날의 독도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때에 장한상에 위해 조서조정은 우산도가 300리에 지나지 않는 울릉도에 가까운 조선의 영토라고 영유의식을 명확히 했다.²⁹⁾

또 『竹嶋紀事』에도 “안용복은 울릉도에 있는 동안 겨우 2번 독도를 보았는데, 그 섬의 이름은 조선인들 사이에서 우산도라 불리어진다. 가본 적은 없다. 위치는 울릉도 북동쪽으로 1일정도의 항로에 있다”고 尙馬島에서 진술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은 오늘날 독도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안용복은 독도의 위치를 울릉도 동남쪽 대신에 북동쪽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사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독도는 날씨가 선명한 날에 울릉도의 해발 200미터 정도 지점에 오르거나, 울릉도에서 독도방향으로 15키로 정도 지점에서 보인다. 현재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 일수는 1년의 7분의 1정도이다. 안용복이 2번을 보았다고 한다면, 1년에 14번 해발 200미터 지점에 올랐다는 결론이다. 안용복은 바다에서 독도를 보았기 때문에 방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울릉도 북동쪽에 독도가 있다고 한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다.³⁰⁾ 안용복의 「竹島1건」으로 독도가 조선영토로서 인식되었으나, 그 후 일본과 영유권분쟁도 없었을 뿐

28)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29)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30)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만 아니라, 울릉도를 비롯해서 공도정책 중이라서 독도는 섬으로서 가치가 거의 없었기에 변경지대로서 방치되었던 것이다.³¹⁾ 그러나 변경지대로서 사실적인 지식이 단절되면서도 지도에는 항상 울릉도와 더불어 등장하게 된다. 이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 거리에 있었기에 부속도 혹은 한 쌍³²⁾으로 인식되어서 지도상에 그려졌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에 그려져서 竹島(울릉도 주변의 대섬)로 인식되는 경우도 생기곤 했다.³³⁾

川上健三는 특히 안용복 증언에서 대의는 무시하고 사소한 오류만을 일일이 지적하여 안용복의 활동 전체를 허위과장뿐이라고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막부의 울릉도도해의 금지조치도 안용복의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안용복의 도해 5개월 전에 이미 도해금지조치가 취해져 있었기 때문에 안용복도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植田捷雄³⁴⁾와 太寿堂鼎³⁵⁾도 川上健三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下条正男는 『竹嶋紀事』에서 안용복이 본 우산도는 울릉도의 북동에 있다고 말하므로 독도가 아니고, 竹島(울릉도 주변의 대섬)라고 주장한다. 또 안용복은 『변례집요』에서 隱岐島를 가는 중에 매우 큰 섬을 발견했다고 했다고 공술했는데, 下条正男는 이를 함부로 해석하여 안용복이 발견한 섬은 독도가 아니고 隱岐島이라고 하여 사료조작을 자행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부정하고 있다.³⁶⁾ 수많은 올바른 자료는 전부 무시하고, 당시 동해의 무인고도의 방위를 오늘날의 인식을 기준으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산도는 竹島」로서 독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³⁷⁾ 독도 연구자인 塚本学도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이 사실에 한해서는 고문헌 등장하는 울릉도 이외의 한 섬을 우산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31)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32) 일본측의 「竹島-松島」, 한국측의 「울릉도-우산도」라는 형식으로 고문헌과 고지도에 항상 같이 등장한다.

33)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34) 植田捷雄, 「竹島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第54卷 第1号, 1965, pp. 29-30.

35) 太寿堂鼎, 「竹島紛争」, 『国際法外交雑誌』第64卷4-5合併号, pp. 114.

36)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37) 실제로는 남동쪽도 아니고, 정동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한다.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4) “17C 『隱州視聽合紀』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齋藤豊仙의 『隱州視聽合紀』에 「隱岐島가 있고, 서북에 松島, 竹島가 있다. 일본의 서북한계는 이 州로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州」는 「행정단위」로 쓰이는 말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섬」을 「州」라고는 하는 경우는 없다. 村川, 大谷가문이 幕府로부터 울릉도 도항 면허를 받았는데, 鳥取藩은 후일 松島와 竹島에 대한 知見에 관해 막부로부터 「御尋の御書付」의 질문을 받고, 「竹嶋는 隱岐付屬이 아니다.」 「竹嶋, 松嶋 그 외 兩國(出雲松江藩-필자주)의 부속 섬은 없다」라고 하는 회신을 보냈었다. 이 合紀는 隱岐를 관리하는 出雲藩의 특명으로 번사 齋藤豊仙의 조사보고서로서 出雲藩의 공식견해서이다. 그러니까 出雲藩, 松江藩에서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기에 당시의 일본지도에는 竹島, 松島가 일본영토로 되어 있는 지도는 단 하나도 없다.³⁸⁾

서북한계가 울릉도도 아니고, 독도도 아니고, 울릉도와 독도가 90키로나 떨어져 있는데, 울릉도, 독도가 서북한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불리하니까 언급을 피하는 형식으로 사료를 조작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 듯하다. 川上健三도 「관문7월 가을 8월 命을 받고 隱岐島를 둘러보고 저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수록한 것」이라고만 언급하여 울릉도를 일본의 한계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竹島, 松島를 일본의 서북한계로 보지 않고, 일부러 일본의 서북한계로 해석되는 「隱州의 서북한계」를 은폐했다. 田村清三郎, 中村栄孝, 塚本学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인물인데, 한국영토를 인정하는 자료라서 언급을 피했다. 大西俊輝는 이 두 섬(竹島, 松島—筆者注)은 무인도이다. 여기서 고려를 보는 것은 隱州에서 雲州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서북경계는 이 隱州를 경계로 한 것」이라고 하여 隱岐島를 일본영토의 끝이라고 해석했다.³⁹⁾

그런데 1956년 일본정부는 齋藤豊仙의 『隱州視聽合紀』(1667년)에서도 松島(지금의 独島) 및 竹島(울릉도)를 가지고 일본의 서북한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⁴⁰⁾ 田川孝三(1988년)는 별다른 논증이 없이, 「일본의 서북한

38) 隱岐古記, 隱岐紀行에는 「생각건대 隱岐郡이 福浦에서 松島까지 해상69리, 竹島까지 100리4정이다. 한인은 竹島를 울릉도라고 칭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松島, 竹島라고 하여 우리영토가 되었다」 하고 있으나, 실제로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이후이다. 이를 볼 때 이 두 기록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대일본사』에서는 『은주시정합기』를 해석하면서 竹島와 松島를 일본영토에 隱岐의 179개의 섬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39) 「下条正男への批判, 隱州視聽合世紀」,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계는 이 州(州는 섬의 의미)라고 해독해야할 것」이라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서북한계로 한다는 것이다.⁴¹⁾ 下条正男는 州에는 섬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隱岐島를 隱州라고 한 것처럼, 이 州는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田川孝三(1988년)와 下条正男는 사료를 조작해가면서 내셔널리즘에 입각하여 국익을 대변하는 일본외무성의 주장을 지지했다.

下条正男는 「州」가 「島」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안정복(이익의 제자)의 『성호사설』에서 「안용복의 공으로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찾아왔다」는 의미로 「一州의 土를 찾았다」라는 구절을 지적했다. 그러나 여기서 「一州」라는 것은 안용복이 「朝麟兩島監稅將」라고 칭했던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 「伯耆国大谷, 村川가 官으로부터 朱印을 받아서 배를 울릉도에 보냈다」고 하는 기록을 해석하여, 齋藤豊仙이 울릉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에 『隱州視聽合紀』에 기록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인선(실제로 奉書船)은 막부가 외국에 도항을 허가한 선으로서 울릉도가 외국의 영토라는 것을 의미했다.

横川新은 「두 섬 간의 거리 등을 생각하면 松島는 属島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하고 있다.⁴²⁾ 『隱州視聽合紀』에서는 「松島」를 「竹嶋近所之小島」라고 하여 당시 울릉도와 독도는 항상 한 쌍으로 표현되었는데, 두 섬의 이용가치가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보이는 거리에 있고 동해에는 두 섬밖에 없다. 그렇다면 속도론에 동의되지 않는다면, 두 섬이 한 쌍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외무성은 이처럼, 川上健三도 「일본의 끝은 隱岐島」라고 할 정도로 감히 조작이 불가능한 사료를 조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인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5) “林子平의 「三国接壤地圖」 (1785) 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되었다.”

『三国通覽圖說』안에는 「三国接壤地圖」가 삽입되어있는데, 이 지도에

40) 「下条正男への批判, 隱州視聽合世紀」,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41) 「下条正男への批判, 隱州視聽合世紀」,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42) 横川新, 「竹島」, 『영토』, 일본의 국제법사례연구(3), 1990, pp. 166-167.

는 울릉도와 독도를 색채로 조선영토로 표기되어있고, 竹島 옆에 「이 섬에서 隱州를 볼 수 있다. 또 조선도 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하야시는 「三国通覽図説」이 지도를 만들 때 「조선국전도」와 長久保赤水의 「日本輿地路程全図」(1775)를 참고로 그렸다고 『三国通覽図説』에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竹島 옆에 있는 이름 없는 작은 섬은 長久保赤水 지도의 松島(독도)임에 분명하고, 조선반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음으로 울릉도와 같이 독도는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메이지시대의 태정관을 비롯한 메이지정부가 「竹島 외 1도 일본과 관계없음」이라고 하여 「1도」라고 표기로 松島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하야시의 지도를 참고로 했기 때문이다.⁴³⁾

(6) “長久保赤水の 「日本輿地路程全図」(1775), 「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1779) 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로 표기되었다.”

長久保赤水の 「日本輿地路程全図」에 울릉도와 독도를 경위도선 외에 그려 넣었다. 일본열도의 모든 섬들은 경위도선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울릉도와 독도는 경위도선 외측에 그려져 있다. 일본외무성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로서 이 지도를 들고 있다. 이 지도에는 「이 섬(竹島, 松島)에서 고려가 보이고, 또 雲州는 隱岐를 본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기록이 있다. 즉 「고려-울릉도, 독도」와 「雲州-隱州」간의 거리를 양분해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울릉도, 독도는 고려(조선)의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林子平가 「삼국접양지도」를 그릴 때 長久保赤水の 「日本輿地路程全図」를 참고로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참고로 하여 그린 「삼국접양지도」에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반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長久保赤水 지도에 있는 울릉도, 독도는 조선영토로 인식하여 그려진 것임에 명백하다.

이 지도는 관선지도를 참고로 그린 것으로 「官許 安永7年 戊戌2月 原刻」으로 볼 때 막부공인의 준관선지도이다. 1778년(제1판), 1791년(제2판), 1811년(제3판), 1833년(제4판) 등 여러 번 출간되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것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 이처럼 에도시대는 울릉도, 독도를 한 쌍으로 취급되어 조선영토로 취급하고 있었다. 근세시대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취급한 지도는 단 한 점도 없다.

43) 「江戸時代の地図」,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7) “17C 「竹島 (울릉도) 도항면허」 는 울릉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이다.”

조선은 1403년 왜구들이 울릉도를 노략질하였기에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을 쇄환하고 섬을 비우고 관리해왔다. 1693년 안용복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尙馬藩主가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을 때 조선조정이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던 것만으로 봐도 조선조정이 울릉도를 조선영토로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근세시대의 일본측 문헌에 울릉도,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곳은 단 한 곳에도 없으며, 오히려 조선영토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川上健三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조선정부는 15세기부터 울릉도에 대해 공도정책을 실시하여 사실상 섬을 포기하고 있었다. 1618년 막부 초부터 발급한 竹島도해면허 이후 울릉도는 大谷、村川 두 가문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졌고, 울릉도까지의 왕복 도중에 오늘날의 竹島(당시는 松島, 독도)도 개발되었다. 특히 특산품은 막부에 진상되었으며 조선의 방해 없이 울릉도 경영은 이 두 가문에 의해 약80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1692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다수의 조선인과 충돌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즉 ‘공도정책’을 영토포기로 간주하여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고,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한다.

울릉도에서 양국 어부의 충돌로 1692년부터 1696년 사이에 양국정부간에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발전하였는데, 막부는 최종적으로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고, 일본어부의 울릉도 도해면허를 취소했다. 사실이 분쟁은 울릉도분쟁뿐만이 아니고, 「울릉도-독도」 분쟁이었다. 그런데 사실 막부는 울릉도도해만 금지했다. 그 이유는 막부가 도해면허를 허가한 것이 울릉도도해였고, 독도도해는 면허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독도는 도해를 허가할 정도로 섬으로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용복 일행이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침입을 꾸짖었을 때 자신들이 松島(독도) 사람이라고 하였기에 松島도 조선영토라고 일본측에 항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막부는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는데, 이때 막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했다든가, 도항을 허가했다고 하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따라서 안용복의 주장처럼 막부는 당시 조선의 인식대로 울릉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 이는 그 이후에 일본지도 등에서 울

릉도, 독도를 조선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검증된다.

川上健三는 울릉도 도항면허를 울릉도배령으로 해석하여 당시 막부가 일본영토로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부시대의 주인선에 의한 도항면허는 외국에 출타할 때 허가해주는 것으로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타국 영지에 잠입하여 어로에 종사했다던가, 밀무역을 행했다는 실적으로는 실효지배의 해당사항이 될 수 없다.⁴⁴⁾

(8) “「松島渡航免許」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이다.”

川上健三가 에도시대에 竹島도해면허로 竹島도항을 하고 있던 大谷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고문헌을 인용하여 松島도해면허를 받았다고 왜곡했다. 일본외무성은 이를 근간으로 松島면허를 받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川上健三가 주장하는 근거는 연보9년 막부순검사에게 청원한 문서 속에 3대의 大谷九右衛門(勝信)은 「竹島로 가는 길에 둘레가 20평되는 작은 섬(松島)을 24,5년 이전에 阿部四良五郎가 배령하여 도항했다」고 기록했다. 그 후 4대 大谷九右衛門(勝房)은 元文원년(1740) 4월 寺社奉行에 제출한 청원서 속에 3대 九右衛門가 松島를 배령하여 도항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를 근거로 川上健三는 万治2년(1659) 阿部四良五郎이 松島 도항에 관한 내의를 얻어 寬文원년(1661) 大谷가문이 松島도항을 시작했다고 추측했다.⁴⁵⁾

그런데 3대의 大谷九右衛門은 松島배령과 도해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寬文원년 竹島도해면허증」과 같은 松島도해면허라는 말은 없었다.

1666년 大谷가문의 배가 조선에 표류했을 때 尙馬藩에 소지품을 조사했는데, 「竹島도항면허증」은 발견되었는데, 「松島도항면허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川上健三가 아무런 논증 없이 「松島渡航免許」를 처음 주장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독도도항면허를 받아 독도를 경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증거로 독도를 실효적 지배했다고 주장한다.

독도도해의 허구성에 관해서는 나고야대학의 池内敏가 논증했고, 독도연구자로서 内藤正中, 大西俊輝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塚本学, 下条正男는 일본영토로서 치명적인 근거에 대해

44) 「下条教授の誤読」,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45)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서는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료를 조작하고 있다.⁴⁶⁾

(9) “근세 일본은 松島(독도)를 경영했다.”

일본은 울릉도를 공도정책으로 영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울릉도보다 더 멀리 있는 독도에 대해서도 당연히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川上健三가 이를 처음 주장했고, 皆川洸, 植田捷雄, 太寿堂鼎 등이 여기에 동조했다. 植田捷雄는 皆川洸에 동조하여 “일본이 이로 인하여 1618년에서 1696년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경영했으므로 일본이 원초적인 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皆川洸는 공도정책기간에 정기적으로 조선이 수토를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독도까지 수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⁴⁷⁾

川上健三는 1696년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을 때 독도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랬을까? 그 증거로 「竹島図説」, 「長生竹島記」, 八右衛門의 증언, 독도를 상세히 묘사한 「竹嶋考」 등을 들고 있다. 이런 川上健三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인물은 田畑茂二郎⁴⁸⁾, 皆川洸⁴⁹⁾가 있고, 植田捷雄는 1882년 이규원이 독도를 탐사하지 않은 것은 바로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이라는 추론했다.⁵⁰⁾

이들은 「竹島図説」(1751-63)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竹島図説」은 北もと通あん이 因人某에게 전해들은 기록을 편찬한 것으로서 「隱岐国松島」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大谷、村川는 竹島渡海禁止에 대해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부에 의견서를 올릴 때, 「竹島는 往古부터 日本이 분명히 支配했다」고 할 정도로 과장이 많은 인물로서 이들에 의한 전문으로 기록된 신빙성이 없는 서적이다.

또 이들은 「長生竹島記」(1801)에서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서적은 大社の 矢田高当가 저술한 것으로, 元祿 연간에 隠州에서 竹島에 건너간 竹島丸의 水主로부터 전해들은 大社仮宮漁師椿

46) 「竹島=独島 「日本の固有領土」説の検証」,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if-moon/>.

47) 皆川洸, 「竹嶋紛争と国際判例」, 前原光雄教授還暦記念編, 『国際法学の諸問題』, 慶応通信, 1963, pp. 364.

48) 田畑茂二郎, 「A.A新興諸国と国際法」 『思想』, 1965년10월, pp. 110.

49) 皆川洸, 「竹嶋紛争と国際判例」, 前原光雄教授還暦記念編, 『国際法学の諸問題』, pp. 364.

50) 植田捷雄, 「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第54卷 第1号, p. 30.

儀左衛門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당시 竹島丸가 도항했을 때 松島를 도중의 기항지로 늘 이용했다. 「長生竹島記」(1801)에 「松島를 本朝(일본)의 서쪽 끝」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민간인의 전문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전문은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이를 사실처럼 인용하고 있다.

太寿堂鼎도 「쇄국정치 하에서도 독도 도항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1836년의 하마다(浜田)의 回船問屋会津屋八右衛門에 대한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금령을 어기고 竹島에 도해하여 사형에 처해졌지만, 「松島까지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竹島에 건너갔다」고 판결문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다.⁵¹⁾ 그래서 막부는 竹島도항은 금지했지만, 松島(독도)도항은 금지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모두 전문으로서 실효적 지배를 증빙하는 결정적인 사료는 될 수 없다.

4. 독도의 근대사의 사료조작

(1) “「竹島 외 1도」에서 「1도」는 독도가 아니다.”

1877년 메이지정부의 태정관은 「竹島와 1도는 우리나라(일본)와 관계없는 땅임을 알아둘 것」이라고 지령을 내렸다. 島根県이 내무성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본해내 竹島 외 1도의 지적편찬방법문의」에서 「현재까지의 고문서나 오래된 기록이 전해져있는데, 별지와 같이 섬의 개략적인 유래와 도면을 첨부하여 우선적으로 보내드립니다」라고 하여 「섬의 유래」에 대해 「磯竹島, 즉 竹島라고 칭한다. 隱岐国の 서북 120리(480키로) 정도의 거리에 있다. 주위는 약 10리(40키로)이다. 산은 험준하여 평지는 적다. 강은 3개 있다. 그리고 폭포도 있다. 그러나 계곡은 수목과 대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수원은 알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1개의 섬이 있다. 松島라고 한다. 주위는 30정(3.3키로)이다. 竹島와 같은 항로에 있다. 隱岐島를 지나서 80리 거리에 있다. 수목과 대나무는 거의 없다. 또 어류와 짐승(바다사자)이 서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松島와 竹島는 바로 에도시대의 지도에 나타나는 「隱岐島-松島-竹島」와 거의 흡사하게 지리적 위치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松島는

51) 太寿堂鼎, 『領土帰属の国際法』, 東信堂, 1998, pp. 197-199.

오늘날의 독도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竹島 외 1도는 松島(독도)임에 분명하다.

메이지정부는 지도상으로 동해의 섬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일본의 고문헌상에 등장하는 「竹島(울릉도)-松島(독도)」 2개 섬의 인식이 있고, 근대에 들어와서 유럽인들이 측량하고 제작한 일본지도와 유럽지도에 隱岐島를 제외한 ‘2개도설’과 ‘3개도설’이 등장한다. 메이지정부는 동해지리에 대한 무지에 의해 이들 지도 속에서 명칭의 대혼란을 겪게 된다. 외무성 기록국장 渡辺洪基는 「홀넷 록(ホルネットロック)이 일본영토에 속하는 것은 각국 지도에 모두 있다」라고 했다. 홀넷 록스(ホルネットロック)는 勝海舟가 그린 ‘3개도설’ 지도의 竹島를 말한다. 그래서 天城号가 울릉도, 독도를 조사하여 竹島(울릉도)는 「古來부터 우리 版圖 외 지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⁵²⁾ 이 시기에 독도는 영토문제가 되지 않았고, 울릉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자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그러나 1877년의 태정관문서는 이런 혼란을 극복하여 일본고지도와 문헌에 의한 「竹島(울릉도)-松島(독도)」 2개 섬으로 명확히 인식하여 이들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下条正男는 「竹島 외 1島」의 ‘1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근세시대 한일양국의 지도와 문헌에 울릉도와 독도(松島, 우산도)는 대부분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의 것이 아니고 한국의 것이라는 말이다.

(2) “1900년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

葛生修亮이 1900년 1년간 조선주변 바다를 조사하여 『韓生通漁指針』(1903)을 집필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울릉도에서 동남방향으로 30리 우리 隱岐國을 서북으로 거의 같은 거리에 海中에 무인1도가 있고, 맑은 날 울릉도 산봉 높은 곳에서 이 섬을 볼 수 있다. 한인 및 우리나라 어부들은 이를 양코라고 부른다」고 하여 독도를 양코도라고 했다. 한인과 울릉도에 출어하는 일본인들은 양코도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독도가 울릉도 사람들이 왕래한 삶의 터전으로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조선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일본군함 新高号는 1904년9월25일 일지에 「리양코루도암을 한인들은 독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어부들은 줄여서 량코라고 부른다」고 기록하

52)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p. 174.

고 있다. 위의 두 기록을 볼 때 당시 독도는 울릉도 거주 한인들은 독도라고 부르고, 어부들과 일본인에게 고용된 한인들은 랑코도라고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고종황제는 1900년 칙령41호를 명하여 「울릉전도, 竹島, 석도」를 울릉도군 관할로 지정했다. 이때 독도를 ‘石島’로 표기했다. 당시 이주자의 80%이상이 전라도 출신으로서 전라도방언에 의해 돌섬(石島)을 ‘독도’라고 불렀다.

심홍택 군수는 1906년3월 시마네현 관리가 내방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리면서 「본군 소속 독도」라고 칭했다. 즉 울릉군수는 이미 독도가 울릉전도와 죽섬을 포함해서 울릉도군의 일부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울릉도에 개척민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울릉도에서 날씨가 청명하면 보이는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바위섬이라는 성질 때문에 독도라고 불렀고, 1900년 고종황제는 칙령으로 독도를 한자어로 표기하여 ‘石島’라고 명명했다. 이 석도는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독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大西輝男와 内藤正中, 池内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塚本는 「울릉도 해안 근처에는 오늘날 관음도를 비롯해서 몇 개의 암초도 즉 石의 島가 있기 때문에 칙령의 石島는 이들 주변의 암초의 총칭 내지는 대표적인 관음도가 아니고 반드시 竹島(독도)라고 한다면 지금 좀 증거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하여 석도가 독도임을 반드시 부정하지는 않았다.⁵³⁾

그런데 下条正男는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 증거로서, “석도의 위치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석도가 독도였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이 황제의 명을 받아 울릉도를 조사했을 때 성인봉에 올라가 독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이규원은 「송죽, 우산도 등의 작은 섬이 있으며, 그곳의 사람들은 작은 섬을 이것으로 알았다」고 보고하여 송죽과 우산도가 울릉도 가까이에 있는 섬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획기적이었던 것이다. 下条正男는 이번 조사로 19세기 불명확했던 조선주변의 섬을 분명히 했다. 칙령41호는 이규원 조사 후 18년 후로서, 1900년4월 우용정이 울릉도를 조사했는데, 독도를 조사하지 않았다. 대한제국이 독도를 인식하지 않은 이유는 1899년 간행한 현재의 「대한지지」에 동경124도에서 130도35분 사이, 1907년 장지연의 『대

53) 塚本孝,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第2版)」, 『調査と情報』289号, 国立国会図書館(日本), 1996, p. 6.

한신지지』 울도의 위치는 130도35분에서 45분까지로 되어 있어서 대한제국은 울릉도까지만 영토로 인식했고, 131도55분의 島根県 竹島는 일본영토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⁵⁴⁾ 이처럼 下条正男는 수많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관련 문헌자료 및 지도는 무시하고 민간인이 그린 그다지 신뢰성이 높지 않은 지도나 문헌만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하고 있다.

(3) “1905년 독도 편입조치는 무주지 선점조치로서 합당했다.”

일본의 고대, 중세, 근세시대에 독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증빙하는 결정적인 자료는 단 한건도 없다. 오히려 일본문헌과 지도, 그리고 한국문헌과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인식되어져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독도를 국제공법의 영토취득 방법인 「무주지 선점」 원칙에 따라 영토편입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05년 이전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게다가 심홍택 울도군수는 1906년3월28일 울릉도를 방문한 島根県 관리로부터 독도영토편입(1905년) 사실을 전해 듣고 이튿날 3월29일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를 거쳐서 조정에 보고했다. 이를 보더라도 1900년 이미 근대적인 영토취득요건에 맞춰서 칙령41호에 의해 독도는 조선영토로서 재확인되어 울도군수는 강한 영유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의용학자들은 독도의 역사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横川新은 1905년이전에 독도는 한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와도 분쟁지역이 아니었는데 일본이 1903년 강치잡이를 대규모로 하면서 강치의 난획을 막기 위해 어업 단속의 필요상 편입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横田喜三郎、田岡良一는 한국이 島根県告示가 비밀리에 공고되어 한국정부에 통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하는 것은 확설의 이해부족이다. 국제법에서 통고는 일반 국제법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이 아니며, 통고 등의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편입했을 시점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4) 김병렬,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p. 33, pp. 162-163.

芹田健太郎은 한국이 일본의 영토편입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한일의정서를 강요한 상황이어서 이의제기가 불가능했다고 하지만, 한국은 1904년 시점에서 독도에 대해 완전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면 일본이 지배권행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⁵⁾ 또 역사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근대국제법의 선점(전근대의 무주지 선점이 아닌)원칙으로 편입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太寿堂鼎은 1900년 고종황제 칙령41호에 대해 1905년 이전 일본이 편입하기 이전에 경상남도방언에 石을 독으로 불렀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1881년 울릉도개척민이 붙였다는 것도 한국에서 독도라고 불린 적이 없고, 모두 명확하지 않으며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증명할 수 없다.⁵⁶⁾ 또한 일본이 한국의 독도를 침략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한국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⁵⁷⁾

그러나 영토편입조치는 국가 간의 문제로서 국내적인 조치만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가 없다. 1905년 2월 일본이 취한 편입조치는 국내적인 조치로서 일본 이외의 외국에서 이러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일본이 취했다고 하는 영토편입조치는 국제법의 영토취득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다.

5. 독도의 현대사적 사료조작

(1)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처리했다.”

패전 이후 일본의 영토처리는 기본적으로는 포츠담선언에 입각하여 전후 줄곧 연합국에 의해 취해진 조치를 기초로 하여 최종적으로 대일강화조약에서 처리되게 되어 있었다. 연합국은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조선이 독립되면서 독도는 우선적으로 한국영토로 처리되어 실질적으로 한국어민들이 독도에서 조업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했다. 그 후 1906년1월의 SCAPIN677호,

55) 芹田健太郎, 『島の領有と經濟水域の境界画定』, 有信堂, 1999, pp. 231-232.

56) 太寿堂鼎, 「竹島紛争」, 『國際法外交雜誌』第64卷4-5合併号, 1966, pp. 115.

57) 太寿堂鼎, 「竹島紛争」, 『國際法外交雜誌』第64卷4-5合併号, pp. 125.

1906년6월의 SCAPIN1033호는 일본의 행정적 정치적으로 분리하여 일본어선의 접근을 금지하여 한국의 독도실효적 지배를 재확인시켰다. 연합국의 이 조치를 바탕으로 한국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미국을 움직여서 SCAPIN677호를 변경하려고 노력했다. 연합국은 종래 한국영토 독도라는 인식아래에 강화조약의 미국측 초안의 작성 과정에서 1-5차 미국초안까지 줄곧 한국영토로 처리했다. 그런데 제6차 미국초안에서 일본의 로비에 의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조치는 영연방국가(영국, 호주, 뉴질랜드)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어 제7-9차 미국초안에서 독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회피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대일강화조약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무인도인 독도에 대해서는 영토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귀속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여 국경선으로 경계를 주장했던 영국을 설득하여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는 형식의 대략적인 큰 섬으로 영토를 구분했던 것이다.

대일강화조약에서 연합국측은 SCAPIN677호를 변경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한국어민들의 독도실효적 지배에 대해서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독도는 연합국이 한국영토로 인정하여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게 되었고, 연합국은 최종적인 결정을 회피하면서 현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해결을 미루면서 소속결정을 회피했던 것이다.

대일강화조약 이후 독도는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한국이 계속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여 평화선을 선언하여 대외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선언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도 한국은 독도는 한국고유의 영토로서 영토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한국의 입장을 부정하지 못하고 평화조약을 체결되었다. 평화조약의 기본은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한일 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묵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독도는 일본이 1905년 편입했다고 하기 이전에 이미 1900년의 칙령41호에 의해 무주지가 아니고 한국영토로서 일본의 선점 주장은 모순이다. 현재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대일강화조약에서 연합국이 독도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전혀 모르는 미국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희망했다고 해서 불법적인 영토편입조치를 근거로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것은 침략국가

대일본제국의 영토를 반환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독도는 대일강화조약 이전의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SCAPIN677호, SCAPIN1033호에 의해 한국영토로 조치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SCAPIN677호의 「이 지령의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서 언급된 제소도의 최종적인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SCAPIN1033호 제5항의 「국가관할권, 국경선, 어업권의 최종적인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표명은 아니다」라는 조항을 내세워서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1953년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a)에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있는데,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가 제외됨으로 해서 SCAPIN677호의 독도규정이 일본영토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⁵⁸⁾ 이러한 해석을 맨 먼저 주장한 인물은 당시 東京大学 국제법 교수로 재직 중이던 高野雄一이다.⁵⁹⁾ 이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표면적인 해석이고 실제로 독도가 대일강화조약에서 누락된 경위를 조사해보면 연합국 측에서 독도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무인도 독도에 대해서는 연합국이 소속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석도 하지 않고 일본영토로 조치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료조작에 해당된다.

下条正男는 SCAPIN677호를 비롯하여 독도가 한국영토로 조치한 일련의 연합국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해, 1946년 최남선이 저술한 『조선상식문답』의 「조선지리상의 위치」라는 항목에 「도서를 합하면 동경124도 11분 00초에서 130도 56분 23초」라고 하여 도서의 극동은 경상북도 울릉군 竹島(죽섬)라고 했고, 이는 이규원과 동일한 인식으로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는 형식으로 사료를 조작하고 있다.⁶⁰⁾

58) 太寿堂鼎, 「竹島紛争」, 『國際法外交雜誌』第64卷4-5合併号, p. 130.

59) 高野雄一, 『日本の領土』, 東京大学出版会, 1962, p. 69.

60) 김병렬,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p. 33, pp. 173-173.

6. 나오면서

일본외무성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해봤다. 그 결과 일본외무성의 독도영유권주장의 배후에는 어용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일본외무성의 독도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이들 어용학자들은 문헌을 입체적으로 해석하여 독도문제의 본질을 조명하겠다는 자세보다는 일본영토라는 전제하에 그 논리계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독도의 본질보다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한 부적절한 논증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용학자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거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용학자들은 문헌상 증거가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고대시대는 밀림 때문에 볼 수 없었다는 식으로 사료를 조작하여 독도의 지리적 권원을 부정하고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측의 전근대 사료를 보면 대부분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면 일본영토로서의 결정적인 근거는 단한 점도 없다. 그런데 어용학자들은 일본 측의 자료에 등장하는 모든 독도 관련 자료를 일본영토로 해석하고 있고, 한국 측 자료에 등장하는 독도는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형식으로 사료를 조작하여 근세 시대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일본 측의 근대 사료에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 러일전쟁 때에 불법으로 편입한 독도영토조치를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 논리에 의해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한국측의 근대 사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하는 형식으로 사료를 조작하여 한국의 독도영토권원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다.

넷째, 한국은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일본에서 분리 독립되었다. 이때 독도도 연합국에 의해서 우선 조치되어 어부들이 조업하는 섬으로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이는 대일강화조약에서도 묵인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대일강화조약을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처리되었다고 사료를 조작하여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학자들이 내셔널리즘의 입각하여 독도영유권의 모순된 논리를 조작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우선적으로 어용학자들이 학자의 본연 자세로 돌아올 때 비로소 독도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参考文献】

- 김병렬(2001),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다다미디어 .
- 김병렬(1996), 『독도나다케시마냐』 다다미어 .
- 독도연구보전협회(1999), 『독도영유권자료의 탐구』 제2권, 독도연구보전협회.
- 독도연구보전협회(2000), 『독도영유권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 독도연구보전협회(2001), 『독도영유권자료의 탐구』 제4권, 독도연구보전협회.
- 독도연구보전협회(2002), 『독도영유권 연구논문』, 독도연구보전협회.
- 바른역사기획단편(2006), 『독도자료집 1』, 바른역사기획단.
-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 송병기편(2004),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 신용하(1996),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지식산업사.
- 최장근(2005),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 植田捷雄(1965), 「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第54卷 第1号.
- 川上健三(1966), 『竹嶋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 北沢正誠(2006), 「竹島考証」, 바른역사기획단편, 『독도자료집 2』, 바른역사 기획단.
- 下条正男(2004), 『竹島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芸春秋.
- 芹田健太郎(1999), 『島の領有と經濟水域の境界画定』, 有信堂.
- 太寿堂鼎(1998), 『領土帰属の国際法』, 東信堂.
- 太寿堂鼎(1966), 「竹島紛争」, 『国際法外交雑誌』第64卷4-5合併号.
-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 東京大学出版会.
- 田畑茂二郎(1965.10), 「A.A新興諸国と国際法」『思想』.
- 田村清三郎(1969), 『島根県竹島の新研究』島根県総務部総務課.
- 塚本孝(1996),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第2版)」, 『調査と情報』289号, 国立国会図書館(日本).
- 中村栄孝(1969), 『日鮮関係史研究』吉川弘文館.
- 堀和生(1986.12), 「1905年の竹嶋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No.24.
- 皆川洸(1963), 「竹嶋紛争と国際判例」, 前原光雄教授還暦記念編, 『国際法学の諸問題』, 慶応通信.
- 村川家文書(1695.5), 「元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
- 横川新(1990), 「竹島」, 『영토』, 일본의 국제법사례연구(3).
- 『半月城通信』(2006), <http://www.han.org/a/haif-moon/>.

要 旨

日本は独島の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歴史性から見ると、独島が日本領土である根拠は全くない。にもかかわらず、日本外務省は何を根拠として独島の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その背景には、独島を都合良く研究している多くの御用学者たちが存在した。彼らは、国益のために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外務省の立場を支持するために領有権の根源とは全く関係のない領有権主張の論理を啓発していた。このような御用学者が存在する限り、韓日間の独島問題は解決されないはずだ。この御用学者は様々な史料を操作していた。すなわち、地理的に鬱陵島から独島が見えるにもかかわらず見えないと否定する。前近代に韓国は独島を実効支配したことがなく、むしろ日本が実効支配したと主張する。近代にも韓国は独島を実効支配したことがない。しかし日本は国際法に基づいて無主地である独島を先占して日本領土として編入して実効支配したと主張する。敗戦後、サンフランシスコ対日講和条約によって日本領土が処理されたが、実際、連合国は独島の領有権についてを何の措置も取らなかった。しかし、日本は独島が日本領土として措置されたと史料を操作し、韓国の独島の実効支配が続いていることを不法占領であると主張し、韓国の領有権を否定している。したがって、独島問題が根本的に解決されるための第一歩は、まず御用学者たちが良心的に独島研究に携わるべきである。

キーワード：史料操作, 竹島, 独島, 鬱陵島, 領土紛争, 領土問題, 日韓領土問題

투 고 : 2006. 11. 30
1차 심사 : 2006. 12. 9
2차 심사 : 2006. 12. 30

住 所 : (712-270) 경북 경산시 조영동 강산애아파트 103동 501호
電 話 : 051-818-5723, 019-553-5733
e-mail : nihonbu@daegu.ac.kr